

정책기획위원회 규정

(제정 2018. 9. 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중요 사항을 연구·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책기획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 발전계획(교육·연구·재정·시설 등)에 관한 사항
2. 기구 조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3. 인력 수급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
4. 정책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5. 제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<신설 2019.6.1.>
7. 그 밖에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<개정 2020.9.1.>

제2장 조직 및 운영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교육혁신본부장, 각 처장,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비서실장이 된다.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될 수 있다.

② 정기회의는 매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한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비밀엄수)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재임기간은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제3장 보칙

제6조(사무관장) 위원회의 사무는 비서실에서 관장한다.

제7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